
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
대구대학교 간

시험·연구설비 공동활용 지원 협약서

대구·경북 지방중소기업청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과
대구대학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는 시험·연구설비
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시험·평가 및 연구
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업무협조 약정을
체결한다.

- 보유한 설비 지원
- 시험·평가 및 연구개발 지원
- 설비사용에 관한 기술교육 지원

2001년 7월 31일.

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
장 박 양



대총 구장 대운

학덕 교



협약서

제1조(목적)

본 약정은 “갑”과 “을”은 시험·연구설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험·평가 및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쌍방간의 역할 분담 및 기타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·성실의 원칙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

제3조(시험·연구설비 공동활용 지원)

① “을”은 중소기업의 시험·평가 및 연구개발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“갑”이 직접 설비사용 신청을 하거나 “갑”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이 사용신청을 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제공하여 시험·평가 및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육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설비사용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설비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설비사용)

① “갑”은 “을”의 설비사용을 위해 사전에 “을”과 협의하여야 하고 “을”은 사용날짜, 사용기간등 사용여부를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

② “을”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설비 사용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“갑”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설비 사용중 파손, 도난, 화재, 기타사고로 인한 설비가 “갑”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“갑” 또는 사용자는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

제6조(수수료 등)

① 설비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“을”의 자체 규정에 의하고 “갑”과 설비 사용자는 설비 사용에 따른 비용을 “을”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설비 사용 비용을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감면의 범위 등은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해석 등)

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책임있는 각기관 대표자 쌍방간의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

②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

단, “을”이 중소기업과 직접 설비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“갑”的 입회하에 하고,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제8조(협약의 효력기간)

① 본 협약의 효력은 양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그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을 연장한다.

제9조(기타)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협약내용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으며, 그 협약 내용을 동 협약서의 부속서로 첨부한다.